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6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1696 취득세감면추징분경정 및 취득세추징분경정 청구
원 고	A
피 고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16. 9. 29.
판 결 선 고	2016. 11.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취득세 등 부과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6

가. 원고는 2009. 11. 20. [redacted]군 B 임야 9,9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가구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C'를 설립하였고, 2009. 12. 1. [redacted]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12. 18. 이 사건 토지상에 일반철골조 샌드위치패널지붕 1층 공장 1,45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다음, 2009. 12. 30. 이 사건 건물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4. 7. 1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472,7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전에 면제하였던 취득세 13,911,560원, 농어촌특별세 1,391,150원, 등록세 5,564,620원, 지방교육세 1,037,290원 합계 21,904,6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보아 2014. 7. 11.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을 287,456,2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8,459,820원, 농어촌특별세 788,480원 합계 9,248,3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 2. 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9. 기각결정을 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6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을 250,874,500원으로 재산정한 후, 2016. 7. 11. 원고에 대하여 이미 부과·고지하였던 지방세 9,248,300원(가산금 2,612,170원 별도)을 지방세 8,071,350원(가산금 2,279,700 별도)원으로 감액 변경하는 통지를 하였다.

사. 그 후 피고는 2016. 9.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2014. 7. 11.자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모두 감액하되, 대신 납부불성실 가산세 일수를 종전 905일에서 1,690일로 변경·계산하여 최종적으로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변경 통지(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1처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10. 8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992㎡를 주식회사 [redacted]에게 임대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 한다)에서 원고의 아버지인 D이 2010. 6월경부터 계속하여 가구제조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쟁점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의 감면이 유지되어야 한다.

2)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472,7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정당한 과세표준은 취득시 매입가액(공급가액)인 269,839,532원이라 할 것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6

3)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후 공시지가 29,400원(2013년)과 지목변경 전 공시지가 640원(2012년)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287,456,200원을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2010. 6.경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고시한 공시가격이 없었으므로, 인근 유사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하거나 환산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되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2. 18.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0. 6. 11. 관할관청에 C에 대한 공장등록을 마쳤다.

2) 원고와 주식회사 [redacted]는 2010. 8. 22. 이 사건 건물 중 992㎡와 이 사건 토지 중 4,998㎡를 원고가 주식회사 [redacted]에게 2010. 8. 22.부터 2012. 8. 21.까지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12월경부터 2010. 8월경까지 발생한 전력요금을 주식회사 [redacted]텍이 납부하였다.

4) 원고에 대한 직장조회 결과, 원고는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에 있는 한국 [redacted]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 7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6

5) 원고는 2009.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및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액을 472,7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6) 피고는 2008. 12. 29. [redacted]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2009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고시」(군위군 고시 제2008-48호)를 군청 홈페이지에 고시하였는데, 위 고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09년도 시가표준액은 ㎡당 326,000원이다.

7)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의 연도별 공시지가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당 원)

연도별 / 지번별(지목)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B	(임야)	600	630	600	640	29,400	31,000	33,400
E	(공장용지)	0	36,300	32,900	34,900	32,000	34,500	36,200
F	(공장용지)	0	33,800	30,600	32,400	32,000	34,500	36,200
G	(대)	53,800	47,900	49,000	52,200	54,100	55,200	58,6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6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제출한 거래내용 확인서(갑 제1호증)는 사인간에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여 세금계산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직접 C를 운영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원고가 2010. 6월경 이 사건 건물을 소재지로 하여 공장등록을 마쳤음에도, 이 사건 건물의 2009. 12월부터 2010. 8월까지의 전력요금을 C가 아닌 주식회사 에스케이하우징텍이 납부하였던 점, ③ 원고가 C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원고는 서울 소재 직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C를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일인 2009. 12. 18.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액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 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6

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제3항 본문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스스로 2009. 12. 30.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472,700,000원으로 기재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갑 제2호증)에 기재된 거래내역은 대부분 재료비에 해당하여, 노임비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이 269,839,532원이라고 하더라도, 위 금액은 구 지방세법 관련 법령에 의하여 피고가 결정·고시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09년도 시가표준액에 이 사건 건물면적을 곱한 472,700,000원(= ㎡당 326,000원 × 1,450㎡)에 미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이 472,700,000원임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관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6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시방세법 시행령 제82조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하되,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2009. 12. 18.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변경요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당 29,400원)에야 비로소 반영된 점, ② 이에 피고는 인근 유사토지(경북 군위군 H 답 2,981㎡)의 2009년 개별공시지가(㎡당 17,000원)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종합 적용배율 1.513)하여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당 25,700원)을 산정한 다음, 위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이 반영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2009년도 개별공시지가로서 ㎡당 600원)의 차액인 ㎡당 25,100원에 이 사건 토지의 면적 9,995㎡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6

곱한 250,874,5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점, ③ 원고가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 등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에 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토지의 인근 토지 중 지목이 공장용지 또는 대지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오히려 이 사건 토지의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또는 피고가 위와 같이 산정한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을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이 250,874,500원임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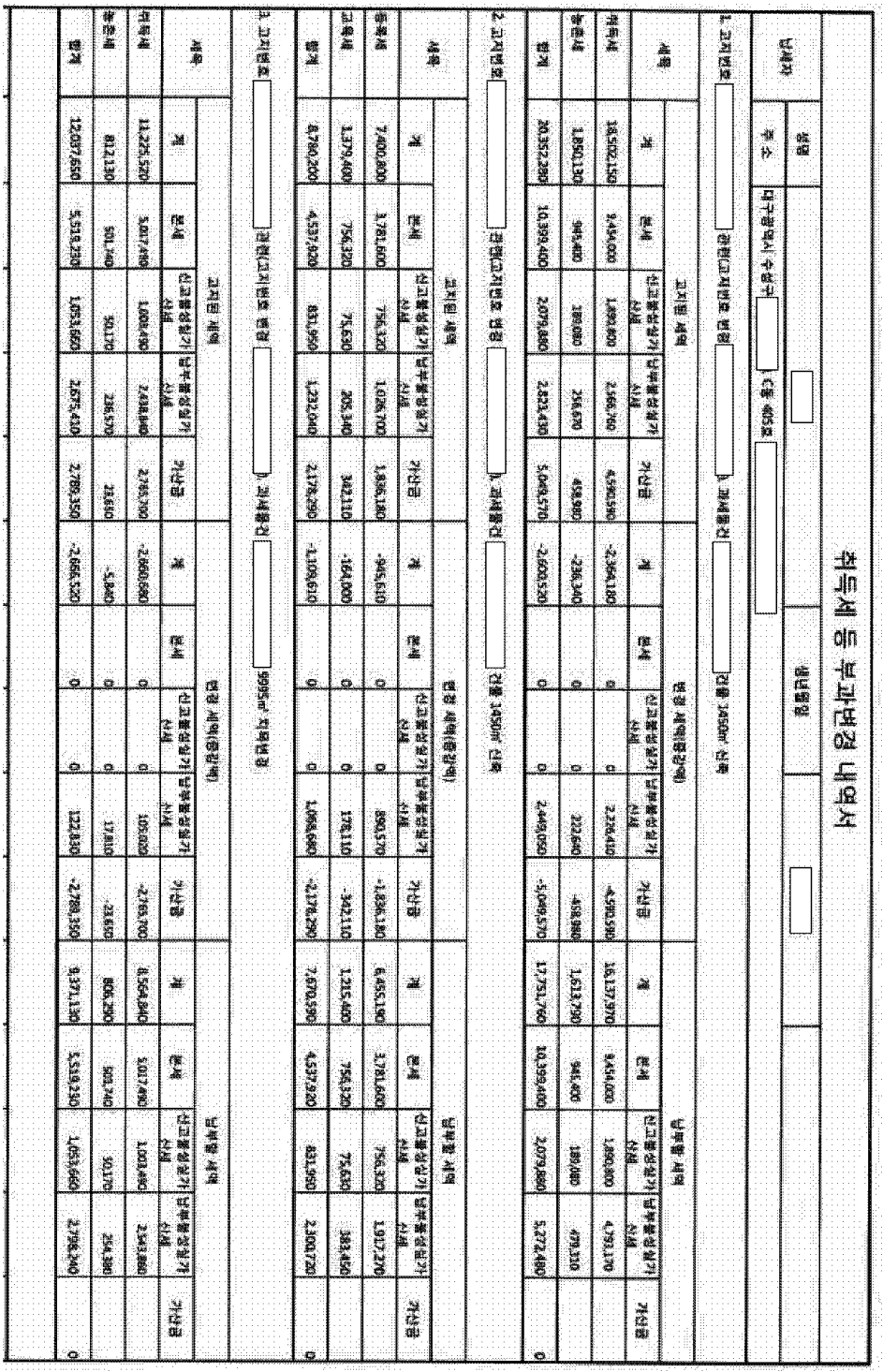
재판장 판사 백정현

판사 임성민

판사 유선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6

별지 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6

별지 2

관계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6

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③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끝.